

제 12016-19919 호

졸업증명서

성명: 안지혜
생년월일: [REDACTED]
입학일자: 2013년 3월 2일
과정구분: 석사
대학원: 교육대학원
학과: 교육대학원
전공: 미술교육
학위명: 교육학석사(미술교육)
학위등록번호: 수원대2014(석)083
학위수여일자: 2015년 8월 14일

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16년 12월 20일

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



제 12016-19114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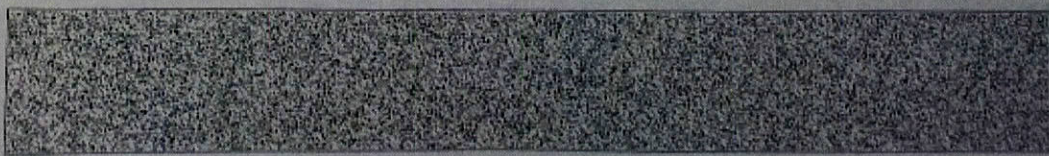
졸업증명서

성 명: 안지혜
생년월일: 
대 학: 미술대학
학부(학과): 조형예술학부
전 공: 동양화
학위명: 미술학사
학위등록번호: 수원대2007(학)1924
졸업년월일: 2008년 2월 13일

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16년 12월 6일

수원대학교 교무입학처장



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

성명 : 안지혜

생년월일 : 1999.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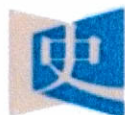
성별 : 여

합격등급 : 3급

인증번호 : 22-338348

위 사람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
제2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위 급수에 합격하였기에
이 증서를 드립니다.

2014 년 02 월 11 일



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



국가기술자격증

■ 자격번호 : 10405102083B

■ 자격종목 :

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

■ 성 명 : 안지혜



■ 생년월일 : 1987. 10. 22

위 사람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
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■ 합격 연월일 : 2010 년 12 월 24 일

■ 발급 연월일 : 2013 년 02 월 27 일

지식경제부

※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3조에 따라
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
이사장이 확인·발급함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

수원대 제 2847 호

교원자격증

성명: 안지혜

주민등록번호: 7

자적: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미술

초·중등교육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와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

2015년 08월 14일

교육부장관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제 45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

수원대학교 총장



1. 검정종별 : 무시험 검정

2. 법정해당 자격기준

초·중등교육법 제 21 조 별표(2) 자격기준 제 2호

3. 수여조건 : 해당없음



인증번호 KA12-3207-606

심리상담사 자격증

성명 : 안 지 혜

생년월일 : 1988년 11월 22일

자격증명 :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



위 사람은 지정된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이수하고
한국심리상담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였
으므로 위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함.

KAPC

2013년 12월 18일



대한민국 심리상담 대표 협회

한국심리상담사협회

The Korea Association of Psychology Counselors





발급번호 : G2019121903211846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확인청구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안지혜	**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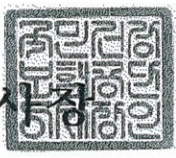
자격득실확인내역

No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
1	직장가입자	재) 화성시인재육성재단	2018.01.01	
2	직장가입자	(재) 화성시장학관	2017.01.13	2018.01.01
3	지역세대원		2014.10.01	2017.01.13
4	직장가입자	아주대학교의료원 (직장)	2014.01.01	2014.10.01
5	직장가입자	아주대학교의료원	2013.09.16	2014.01.01
6	직장피부양자	가톨릭대학교가톨릭중앙의료원	2013.04.18	2013.09.16
7	직장가입자	(주) 스탬솔루션	2011.04.18	2013.04.18
	-----	이하여백	-----	-----

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19.12.19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- ※ 이 확인서의 취득일·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사일·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※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(공인인증서 필요).
- ※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으로 다른 용도(재직증명용, 경력증명용, 대출용 등)로 사용시 공단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